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논란 ‘소프트건설’ 진정한 발전방안은...



봉승권, 건설경제 산업금융팀 기자

지난 연말, 2009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여야의 쟁점 법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던 국회에서 엔지니어링 등 건설산업 관련 업계가 주목할 만한 법안 한 건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허 천 의원이 대표로 나선 ‘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이 바로 그것. 비록 지난 2월 국회가 미디어법 등을 놓고 또다시 여야의 파행이 거듭되면서 동 법안의 처리도 일단 보류됐지만 발의 직후부터 아직까지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기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그 속에서 설계, 감리, CM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물론, 연관 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관련 유관 단체 및 기관들까지 이 법안의 향후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다가 현재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건설산업 선진화방안-비전2020’과 지경부의 ‘엔지니어링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등 각종 정책들도 동 법안의 내용면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1. 개정안 발의 배경 및 취지

건기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허 의원은 “현재 설계 등 용역업자의 신고 및 사업대가, 단체 설립인허가 등 관리·관장업무는 지경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이하 엔법)와 교과부가 담당하고 있고 발주자 및 발주방법, 용역업자 선정 등 발주체계는 국토부(건리법)가 관장하고 있어 법적 지위가 모호해지고 사업자의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이

란 테두리 안에서 설계 등 용역업자를 관리하고자 관리·관장 업무도 국토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수년 전부터 건축설계 분야와 달리 토목설계로 대표되는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이 같은 일원화 주장을 계속해 왔지만 엔지니어링산업이 과거 과학기술부 소관일 당시에는 개정 노력이 지지부진했다가 결국 이번에 의원 입법 형태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또 최근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및 선진화방안 중에도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발전방안과 사업자 관리체계 일원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도 동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허 의원은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진정한 발전은 건설산업이란 테두리 안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기술개발과 글로벌화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2. 추진 경과

작년 말 발의된 이후 동 개정안은 사실상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빨리, 지난 2월 국회 국토해양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지난 2월 하순 국회의 파행과 함께 상임위에서 부처간 협의 부족 및 중복 규제에 관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보류됐다.

동 법안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상정한 3건의 건설 관련 법안 등도 함께 보류된 것. 특히 이 법안의 경우에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만큼 관계부처 협의가 배제된 상태에서 현행 엔

법의 관장부처인 지경부의 반대가 매우 거셌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대표 발의자인 허 의원은 국토부와 함께 규제 관련 사항이나 단체 설립 등에 관한 보완작업을 벌이면서 오는 4월 국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3. 쟁점사항은

개정안 자체의 내용으로만 보면 사실 이렇게 큰 논란이 일어날 소지는 그리 많지 않다. 건설산업에 있어 건설공사의 설계, 감리, CM사업자가 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부처 또는 법령에 관리를 받는 것은 일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처간, 유관기관·단체간, 사업자간 대립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숨어있다.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대략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는 사업자의 신고나, 등록이나 하는 문제다. 각 기술 분야별로 차이는 있지만 현재까지 토목부문 설계, 감리, CM 부문 사업자는 엔법에 의해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만 하면 관련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개정이 국회를 통과, 시행되면 활동주체가 아닌 설계 등 용역업자로 해당 시·도 지사에 등록을 해야만 영업활동에 나설 수 있는 등록제가 시행된다. 통상적으로 신고는 등록보다는 제한 요건이나 제약이 적지만 등록은 규제로 인식될 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 따라서 신고나 등록이나 하는 문제를 놓고 업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미 등록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거나 분야별 시장에서 상당한 입지를 굳힌 대형사의 경우에는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업계의 부실예방 차원에서 등록을 선호하고 있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및 중소기업체들은 기존 신고제를 지지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 현행 신고제 하에서 2000여개에 달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전문 활동주체 중 약 3분의 1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결국 수도권 대형사들과 지방 중소기업체들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부부처간의 갈등과 오해의 소지도 남겼다.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는 국토부는 엔법의 수정이나 개정이 전혀 필요 없고 영업활동이나 수익추구 등 사업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만큼 부처협의 과정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지경부 측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

관장업무를 일원화한다는 명분으로 관리·관장 권한을 빼앗기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새로운 협회단체를 설립하면서 국토부가 등록과 같은 규제를 만들어 자리를 보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토부와 지경부가 과연 어떤 방안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산업과 사업자를 성장,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과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전략 등 각각의 로드맵에 따라 이번 개정안도 좌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끝으로 건설엔지니어링과 타 기술, 산업부문간의 산업융합화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정보통신, 플랜트, 환경 등 전 기술 분야 사업자를 관장하고 있는 지경부와 학계 일부에서는 토목설계 부문이 국토부의 관할 구역에 간헐 경우 최근 및 향후 유비쿼터스 등과 같은 건설산업과 타산업과의 융합에 장애가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을 단순 하도급이나 용역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기술로, 타 기술과의 접목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모든 기술과 기술자들을 관장하고 있는 현행 엔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기술의 융합화는 건설한 사업자와 온전한 산업분야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더욱 활발하게 진행된다며 관장체계가 국토부로 일원화 된다고 해서 유비쿼터스나 스마트하이웨이 등 기술융합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토목부문 보다 더 많은 융합 기술이 필요한 건축설계 분야는 건축법이란 개별법으로 관리되면서도 충분한 융합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4. 업계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관련 업체 및 기관·단체, 기술자들 사이에서도 갖가지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신고 또는 등록 문제를 놓고 영업팀이나 부서는 등록제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총무 등 관리팀이나 부서는 현행 신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 지경부 및 교과부의 관장범위에 있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등록제를 중복규제로 여기고 있는 반면, 국토부 유관단체인 한국건설컨설팅협회회는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산업 테두리 안에서 해당 사업자를 관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인 기술자 개개인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현행 엔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기술자 사업대가 기준이 건설은 물론, 정보통신, 플랜트, 환경 등 모든 기술자에 해당, 적용되다 보니 이를 분야별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기술자도 있고 국가간 FTA(자유무역협정) 등 자유무역체계가 강화되면 선진국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토목엔지니어링만 따로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5. 향후 일정 및 전망

이렇듯 각각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보류됐으니 일단은 이번 4월 국회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 처리여부는 발의 및 심의를 하는 국회의 활동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건설산업 선진화방안-비전2020'이다. 이미 주요 내용으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부문의 육성, 발전을 위해 일원화가

포함돼 있으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개정안과 같은 법령 정비를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선진화방안이 관련 업계 및 부처 간의 충분한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사실상 이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경부가 만들고 있는 엔지니어링산업 증장기 발전전략이나 엔법 개정안이 어떤 작용을 할지도 아직 미지수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지경부인 만큼 발전전략이나 엔법 개정안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관한 관리, 관장 내용이 사실상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국회 국토해양위나 국토부의 법령정비의 전략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 2월 관계부처 또는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없는 법안을 포함 총 4건의 건설 관련 법령이 상정됐으나 단 한 건도 처리, 의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 법안과 어떻게 개정을 추진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것이다.

한편 각 업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소모적인 논란은 필요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 봉승권 e-mail : skbong@cnews.co.kr